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73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18.7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공익적 스타트업과 초기단계 스타트업, 미디어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의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미디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서울미디어랩'을 설립할 예정이며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18호, '15.11.10.)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시장 방침 제121호, '18. 7. 5.)
 - 추진 필요성
 - 미디어 관련 운영 전문성이 요구되고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변화 환경에 부응한 시설·장비·운영 등 전문노하우를 갖춘 미디어 전문기관이자 정부출연의 공신력 있는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미디어스타트업 맞춤형 예비·창업 지원사업
 -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사업
 -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사업
 - 입주기업 및 외부기관 네트워킹 지원 사업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연계 보육기업 홍보 지원
- 미디어스타트업 입주공간 및 협업공간 지원
 - 미디어 스타트업 입주공간(10개사) 지원
 - 스타트업 다목적공간 및 협업공간 지원
- 시설·장비 인프라 연계 지원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제작 시설·장비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 엑셀러레이팅·투자기능 갖춘 전문기관과 성장단계별 연계 지원

라.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1286-8호 길음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지하 1층
- 규 모 : 529.9 m^2 (입주공간, 다목적공간 등 지하 1층)
- 시설개관 : '20.6월 예정
- 기 능 : 미디어스타트업 맞춤형 예비·창업 지원, 미디어스타트업
입주공간 및 협업공간 지원, 시설·장비 인프라 연계 지원
- 소요예산 : 712백만원 ('20년 기준)
- 위탁기간 : 3년(2020. 4. ~ 2023. 3.)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신규위탁)
- 수탁자명(예정) : 시청자미디어재단(방통위 산하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마.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조직담당관에 보낸 문서(2019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보완 제출, 문화시설과 -8844호, 2019. 10. 7.) 기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년도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작성자 : 문화시설과 문화시설2팀 김동준(☎2133-4229)